

금융정보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◆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

동의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동의함 ¹⁾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)	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⁾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)
	□□□□□□-□□□□□□	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

- (1) 본인은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21조제1항 등에 따른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심사를 위해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외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(2)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외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(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정보 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).
- (3) 대상 금융기관등의 명칭, 금융정보등의 범위: 뒷면 참조
- (4) 동의서의 유효기간: 긴급지원비 신청 접수 시부터 5년

※ 작성 시 주의사항

- 긴급지원비는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건·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히 그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.
- 재외국민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재외국민의 진술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착오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비를 지급받은 국민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통하여 본인이 무자력 등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등을 상환하셔야 함을 고려하여 동의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동의자의 신분증(여권 등) 사본과 본인이 직접 이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재외공관 담당영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

금융기관장·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

금융기관등의 명칭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
 - 1)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- 2)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3)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4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- 5)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- 6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- 7)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- 8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 - 9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- 10)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- 11)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- 12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- 13)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- 14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기관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

금융정보등의 범위

1. 금융정보
 - 1)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: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
 - 2)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: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
 - 3)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: 최종 시세가액
 - 4)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, 양도성예금증서: 액면가액
 - 5) 연금저축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 - 6) 1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 또는 할인액
2. 신용정보
 - 1)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 - 2)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3. 보험정보
 - 1) 보험증권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 - 2) 연금보험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
유의 사항

- 이 동의서를 활용한 금융정보등의 확인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동의서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외교부장관·복지부장관 등은 이 동의서를 다시 활용하거나 추가 동의서 제출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21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의 무자력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